

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3년 10월 1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3년 10월 1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07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(2003년10월13일) 상정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수도과장 박명호)

□ 제안이유

- 맑은 물 공급정책이 수요관리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환경부의 상수도 요금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상수도 요금제도 개선 권고사항으로
-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저렴한 요금을 현실화하고 요금체계 개선에 따른 업종 및 효율을 조정하는 등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·보완 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상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계획에 따라 2004년부터 업종별 요금을 평균 2.97% 인상하여 공급단가 대비 판매단가의 현실화율을 89%로 조정함. (안 제26조)
- 상수도 업종별 구분을 현실에 맞도록 업무용중 제조업체에 대하여는 산업용으로 변경하고, 나머지는 영업용과 통합하여 일반용으로 조정함. (안 제27조 제1항)

3.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

질 의	답 변
<p>○전체 업종별 요금인상이 평균 2.97%이지만 가정용이 12.85%로 한번에 많은 인상으로 서민생활 가계에 부담이 클것으로 보는데?</p> <p>○요금이 저렴한 것은 인정하지만 두자리 숫자 인상은 주부들이 과민반응을 보이지 않겠는가?</p> <p>○적용 시기는 언제부터인가?</p> <p>○현재의 공급단가 대비 판매단가의 현실화율은 얼마인가?</p> <p>○언제쯤 현실화율이 100% 되는가?</p>	<p>○현재까지 가정용 요금이 너무 저렴하였음. 12%인상 한다하면 수치상으로는 높아보여도 실제 한달평균 25톤 사용으로 볼때 1,300원 정도 인상되는 것이라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생각됨.</p> <p>○환경부의 방침이 향후에는 업종 구분없이 톤당 가격을 똑같이 할 계획으로 그 때를 대비해서 차츰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봄.</p> <p>○2004년 1월 1일부터임.</p> <p>○현재는 86%이며, 금년에 조정될 시 89%가 됨.</p> <p>○2004년까지 100%할 계획으로 한번에 많이 인상하는 것 보다 차츰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.</p>

4. 토론요지

- 가. 찬성토론 : 없 음
- 나. 반대토론 : 없 음

5. 심사결과

-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

- 없 음

7. 기타필요한 사항

- 없 음

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185호
의결 년월일	2003. 10. 15 (제107회)

제출년월일 : 2003. 10. 1.

제출자 : 부천시장

□ 제안이유

- 맑은 물 공급정책이 수요관리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환경부의 상수도요금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상수도 요금제도 개선 권고사항으로
-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저렴한 요금을 현실화하고 요금체계 개선에 따른 업종 및 요율을 조정하는 등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상수도요금현실화 추진계획에 따라 2004년부터 업종별 요금을 평균 2.97% 인상하여 공급단가 대비 판매단가의 현실화율을 89%로 조정함.(안 제26조)
- 상수도 업종별 구분을 현실에 맞도록 업무용중 제조업체에 대하여는 산업용으로 변경하고, 나머지는 영업용과 통합하여 일반용으로 조정함.(안 제27조제1항)

부천시조례 제 호

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제3항중 “영업용 또는 업무용”을 “일반용 또는 산업용”으로 한다.

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04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.

“별지”
[별표 2]

업종별요율표(제26조관련)

(단위 : m³/원)

계량기구경별 정액요금		업종별사용량요금		
계량기 구경별	요금	업종별	사 용 구 분	요금
13m/m	620	가정용	0 ~ 20이하	320
			20초과 ~ 30이하	500
			30초과	680
20m/m	1,300	산업용	0 ~ 50이하	500
25m/m	2,010		50초과 ~ 100이하	600
32m/m	3,590		100초과 ~ 300이하	700
40m/m	4,900		300초과 ~ 500이하	800
50m/m	8,590		500초과	900
75m/m	16,270	일반용	0 ~ 50이하	600
100m/m	27,120		50초과 ~ 100이하	750
150m/m	60,220		100초과 ~ 300이하	900
200m/m	97,000		300초과 ~ 500이하	1,050
250m/m	143,870		500초과	1,200
300m/m	200,830	대중탕용	0 ~ 1,000이하	500
350m/m	251,580		1,000초과 ~ 1,500이하	600
400m/m	282,910		1,500초과 ~ 2,000이하	700
			2,000초과	800

[별표 3]

업종별 구분표(제27조관련)

업종별	구분내용
가정용 (01)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(기숙사 포함) 2. 담배·연탄·양곡·문방구·지물포·철물등의 소매업 및 부동산 중개업·인장업·행정서사업·수예점·만화가게·구멍가게등으로서 10㎡미만의 소규모 가게 3. 국가·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수용시설 및 국가유공자단체
산업용 (02)	<p>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『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』에서 정의한 공장</p>
일반용 (03)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 2. 단기 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(건축허가를 받아 시공 중인 건물, 운반급수 : 최종단계요율적용) 3.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(최종단계요율 적용)
대중탕용 (04)	<p>일반대중 목욕장업</p>

